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김원학
전화 052-228-4462

보도자료
2020. 7. 23.(목)

제 목 **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의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결과**

불기소처분 사건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2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 -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- ※ 2020. 7. 23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금일(7. 23.) 약사범위반 등 사건의 공소제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
- 기소 전 사건 공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고,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, 공보과정에서 내부규칙이나 비례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
- 다만, 이 사건 공보의 동기, 보호법익의 침해정도, 위법성의 인식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☐